

제4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

1. 일 시 : 1995(4288)년 9월 7일

2. 장 소 : 의회 의사당

3. 개의성립:

1. 참석인원 : 13명

朴贊圭, 李小圭, 明南喆, 李文吉, 吳世一, 金永完, 金京炫, 孫白洙,
金吉煥, 金子洪, 金昌賢, 李在洪, 金三星

2. 불참의원 : 8명

鄭應杓, 李福柱, 文宅鎬, 金八用, 林一男, 陳福春, 金慶禧, 金南鎭,

3. 참석한 공무원

市長 河東賢, 副市長 이병규, 總務課長 以下 各 課長
教育廳 庶務課長

4. 개회선언

副議長

(오전 10시 30분)

※오전 10시 35분 金慶禧, 陳福春의원 참석

5. 보고사항 :

1. 제39회 제4차 회의록 낭독

◇書記 박찬대

- 회의록 낭독

◇金昌賢의원

- 회의록 작성에 있어 동명동의 공동 변소 고려 하라는 것은 오기며, 공동 변소를 설치 운운으로 수정할 것을 발언이 있었음
회의록 수정이 끝난 후 이의 없으므로 통과

2. 교통사고방지 추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

◇金子洪의원

- 본 건 추진위원으로부터 경찰국 보안과장과 교섭한 결과 보고가 있었음

3.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 보고

◇吳世一의원

- 위원장으로부터 시유지(나락 마당)관리에 있어서는 당 구역에다 간이시장을 설치하여 철거 대상자에게 편리를 도모하여 줄 것이며, 매각 처분 하여서는 안된다는 회의를 내무위원회에서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음

※ 오전 10시 40분 鄭應杓의원 참석

◇金永完의원

-목포일보 기재사항에 있어 당시 채무와 직원의 비행 사실은 유감이다.
독축료 32환으로 인하여 임신부를 낙태시켜 출혈을 초래하였다 하니 이 사실을 신중 조치해 주기를 바라며, 본 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하여 3인 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긴급 동의
(재청---7청)

◇金子洪의원

- 본 건에 있어 그 당시 목격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

◇鄭應杓의원

- 찬성 연설이 있었음

※ 오전 11시 10분 의원 참석

※ 표결 결과 재적 17명중 전원 찬동 가결
위원은 鄭應杓, 金永完, 金子洪의원을 지명

4. 시정감사 추가질의에 대한 보고(교육청)

◇教育賢 庶務課長

- 답변이 있었음

◇金永完의원

- 교육청의 사무절차 부당함을 은폐하고 교육위원회로 책임을 전가시킴은 불가한 일이며, 행정부로서 법을 모르고 전라남도의조례, 규칙 등을 무시한 제반공사 사무절차는 사무 태만이라 지적 아니할 수 없으며, 앞으로는 절대 유사 사실이 없도록 바란다.

◇鄭應杓의원

- 거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사무감사에 있어 과오와 모순이 내포 된 점이 있다 하니 이에 대한 처리전말은 어떻게 되었는가? 하는 질의가 있었음

◇教育賢 庶務課長

-전부 정리 되었다.

◇財務課長

-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

◇金永完의원

-징수금 미정리분을 조속 추진할 것과 사무인계에 있어 정확을 기하도록 발언이 있었음

◇金昌賢의원

-너염 대책 질의가 있었음

◇鄭應杓의원

-회의 규칙 위반함을 지적하였음

◇金永完의원

-금반 한양기선에서 해운공사의 선박이 제주도를 항행하고 있으니 항행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받고 다닌다는데 본 건에 대하여 한양과 해운의 양편의 의견을 들어서 목포 발전을 위하여 1회라도 더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 분과 위원장으로 하여금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동의

(재청----7청)

표결 결과 재적 17명중 가 7표로 부결

◇金永完의원

-영세국민에 대한 대역미상환에 있어 미가 양등으로 금월 말일까지 상환함을 실로 불가능한 현상이며, 도의 방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실정에 조감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요로에 건의할 것을 긴급 동의

(재청, 3청), 4청)

◇副議長

-본 건 긴급 동의로써 7청까지 있어야 성립될 성질 이므로 4청까지 밖에 없으니 폐기

6. 부의안건:

1.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 건

◇金子洪의원

-본 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

(재청)

표결 결과 재적17명 전원 찬동 가결

2. 동서기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

◇孫白洙의원

-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
(재청)

◇金子洪의원

-동서기 배치에 모순성이 있으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개의
개의집 찬성, 재청 무함으로 폐기
표결 결과 동의집 재적 17명중 가 11표 가결

3. 시유지(나락 마당) 관리의 건

◇陳福春의원

-본 안 심심 검토키 위하여 10분간 휴회할 것을 동의

◇鄭應杓의원

-위 건 전의원 주지의 사실로서 휴회에 반대하며, 계속 진행할 것을 개의
(재청)
표결 결과 재적 17명 중 가 11표 가결

◇鄭應杓의원

-본 건 행정부서 제안한 것인가?
또는 그 복안은 어떠한가?

◇市長 河東賢

-철거 대상자로부터 진정서 내용과 같이 요청도 있었고 서면으로도 요청이
있었다.
시장으로서 단독 결정하기가 곤란한 문제며, 의장에게도 진정서가 와서 쌍방
합의하에 제안된 것이다.
또 복안은 매도 하여서는 않될 것이며, 장차 현나락마당이 활발성을 띄운 것

은 사실 임으로 우선 간이시장을 설치하여 바닥은 콘크리트로 바르고 천정은 양철로 할 계획이다.

◇陳福春의원

-현 철거대상자의 생계는 비참하다.

현재 나라, 해초, 목화 등은 직접 경영대상자와 만약 목포가 나라마당이 필요 할 리가 있다고 하면 삼학도공사 실적을 보고 있는 매립지광장을 사용하면 목포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.

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나라 마당이 목포 발전에 적지라고 보지는 안한다.

간이시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필연고 판자집의 현상 밖에 안된다.

그렇다면 판자집을 개조해서 살면 되지 않는가?

또 임대를 하여 일정한 건축허가를 수속을 하여 건축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필요 하다고 하여 철거를 단행할 수 있는 문제다.

여사한 점에 비추어 의장을 포함한 의원 5명이 연고자를 조정하여 매각 하도록 하고 본 건축을 하는 동시에 목포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공설운동장을 만들 것을 동의 한다.

◇李在洪의원

-본 건에 있어서 서론은 생략하고 목포시로서는 장래성에 비추어 절대 확보 하여야 되며, 현 37명 세대중 그 중 20세대는 빈한한 세대 임으로 매각 하더라도 살 능력도 없고 대지를 사야되며, 집을 지어야 되며, 또 자본도 필요하게 되니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.

따라서 간이 시장을 지어 그들에게 갱생의길을 열어줄 것을 개의 한다.

(재청)

◇金永完의원

-찬동 발언이 있었음

◇金昌賢의원

-시장 설치 및 예산 출처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장을 포함한 7인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개의에 참가하며,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한다.

(개의집 수락)

표결 결과 개의집 재적 17명 중 가 11표로 가결

◇總務課長 이제국

-시유지 나락마당의 울타리를 하는데 16만환 가량 지출하여야되니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후 승인을 얻을 것과 뇌염 관계로 시비에서 50,000환이 필요하니 본 건 역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후 승인을 얻겠다는 사전 구두 요청이 있었음

(의원 전원 수락 하였음)

◇陳福春의원

-뇌염 만성기에 소독 실시에 있어 고용자만 사역하고 행정부에서 출장 감독을 안하고 있음은 무책임한 처사다.

◇市長 및 社會科長

-내용 설명이 있었음

◇鄭應杓의원

-교통사고 방지에 있어 현 자동차 금지 구역을 연장 하도록(남교동 시장 앞에서 무안군청까지를 시장 앞에서 남교동 부국섬유까지) 시장에게 건의할 것을 동의

(재청)

표결 결과 재적 17명중 가 11표 가결

◇議長

-7인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지명 하였음

朴議長, 陳福春, 明南喆, 金永完, 鄭應杓, 金京炫, 孫白洙 각 의원

◇金昌賢의원

-시 금고 이관 문제에 있어 이관경위 발언이 있었음

◇金三星의원

-이관 가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자 전반 회의시 1차 의회에서

이관 하기로 가결되어 건의할 것을 재론하는 것임
의회의 체면과 위신에 관하니 오늘 회의는 이로 종결할 것을 동의
(재청)

◇鄭應杓의원

-결의한바 예산이나 또는 언제까지 시장을 짓는다는 것을 시장답변하여 주
기 바란다.

◇市長 河東賢

-두가지 방안 즉 각자가 설계에 의한 건축을 한다든가. 또는 예산면에서 중
동, 남교동시장 예산 4,200,000환을 각위께서 양해 한다면 이용 하겠다.

◇議長

-표결 전원 찬동 가결

◇議長

-회의록 서명에 陳福春, 李小圭의원을 지명

◇議長

-폐회선언

(오후2시30분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

1955(4288)년 9월 7일

議長:朴 贊 圭

議員:陳 福 春

” :李 小 圭

作成者 書記:洪 南 식